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3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DART 편집기 제출인 편의 기능 등 개선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3.5]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합병제도의 글로벌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
-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3.5일(화),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은 합병에 준하는 중요한 행위로 보아 합병관련 개정사항을 준용

**첫째,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다.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했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참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된다.

\* 상장사의 경우, 기준시가를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 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제도개선은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열사간 합병(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합병가액 산정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측면)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외형상 합병의 형식을 취하나, 비상장회사의 IPO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 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M&A 제도개선 간담회(‘24.2.6일)」, 「기업 M&A 지원방안(‘23.5.8일)」, 「기업 M&A지원 세미나(‘23.3.27일)」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5일(화)부터 4.1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DART 편집기  
제출인 편의  
기능 등 개선**

■ DART 편집기 제출인 편의 기능 등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3.4]

[주요 내용]

□(개요)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인(약 162,000명)이 공시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DART 편집기\*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서식(530여종)에 맞게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기본 기능 외에, 작성지침 조회, 제출 등 공시업무에 특화된 기능이 탑재된 작성 프로그램

<DART 편집기 주요 개선사항>

공시서류 작성 편의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분·반기보고서 간 자동변환, PDF 파일 첨부 기능 신설</li> <li>▶키워드 찾아 바꾸기, 글꼴 모양등복사 기능 신설</li> <li>▶상용프로그램(훈글,워드등)과의 호환성·안정성 등 개선</li> </ul>
공시내용 자체 점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쉽게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맞춤법 검사 기능 신설</li> <li>▶표의 블록 합계·평균·곱셈 등 수식 자동 계산 기능 신설</li> </ul>
공시 열람 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서류 내에서 특정 항목으로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하이퍼링크 설정 기능 신설(예:요약정보→본문)</li> </ul>

※공시서류 제출인은 누구나 금융감독원 DART 접수홈페이지(<https://filer.fss.or.kr>)에 접속하여 「DART 편집기」를 다운로드받거나 기존 편집기를 업데이트하여 사용 가능

□ (기대효과) 제출인 편의기능이 개선되어 공시 담당자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시 작성·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 오류 감소로 공시 신뢰도가 제고되고, 문서 내 주요 항목간 이동이 용이하여 공시이용자의 열람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 제출인이 공시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DART 편집기(공시서류 작성용 프로그램)를 제공 중

◦ 대내·외 DART 편집기 관련 개선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인 및 공시이용자의 편의 기능 개선

\* 기업공시담당자 설문조사: 맞춤법 검사 추가, 수식 자동계산 강화 등원내 유관부서의견:신고서 요약정보→본문 항목간 하이퍼링크 추가 등

[그간의 DART 편집기 개선사항]

- ◇('14. 5.) 표 편집 및 인쇄 기능 개선, 공시서류 제출단계 간소화 등
- ◇('20. 2.) 문서 자동저장 기능 추가, 문서 내 검색 기능 강화
- ◇('20.12.) 타기업 공시서류 참조(하이퍼링크) 기능 추가
- ◇('21. 5.) 정기보고서 입력 오류 방지 기능 추가
- ◇('21. 7.) 정기보고서 서식 체계 재정비에 따른 요약표-상세표 작성 기능 추가
- ◇('22. 4.) 공시서류 임의제출 여부 점검 기능 추가,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에 따른 기재오류 점검 기능 변경

**2. 주요 개선내용**

□ (공시서류 작성 편의성 개선) 상용프로그램(한글, MS 워드 등)과 유사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편집기의 호환성·안정성 등을 보완

◦ (정기보고서간 자동 변환)사업·분·반기 보고서간 자동 변환 기능을 제공하여 제출인이 정기보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하도록 지원

◦ (PDF 파일 첨부) 서면자료 등을 기존 그림파일 외 PDF 파일로도 스캔하여 DART 편집기로 첨부 가능하도록 개선

◦ (찾아 바꾸기) 문서 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다른 문구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기능 신설(한글의 '찾아 바꾸기'와 유사)

◦ (글꼴모양 등 복사) 글꼴·문단 모양을 복사하여 문서 내에 간편하게 적용하는 기능 신설(한글의 '모양 복사'와 유사)

\* (글꼴 모양) 글꼴 종류, 크기, 색상, 속성(굵게, 기울임, 밑줄)(문단 모양) 들여쓰기/내어쓰기, 정렬 값

◦ (호환성 개선) 상용 프로그램(한글, MS워드 등)에서 복사한 글꼴, 표 모양 등이 편집기에 붙여넣을 때 최대한 유지되도록 개선

◦ (안정성 개선) PC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춰 최신 운영체제 등에서 DART 편집기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보완

\* (운영체제) 윈도우즈 7('20.1월 서비스 종료) ⇒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22.6월 서비스 종료) ⇒ 크롬, 엣지 브라우저

□ (공시내용 자체점검 지원)공시서류 제출 전에 제출인이 기재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2024년 3월호

- (맞춤법 검사) 공시서류 내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쉽게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맞춤법 검사 기능 제공
- (수식 계산) 수치 오류 방지를 위해 표 영역의 합계·평균·곱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 추가(한글의 '블록 계산식'과 유사)

□ (공시열람 편의개선)공시 이용자가 공시서류 내에서 연관되는 항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기능\* 추가

\* (예시) 증권신고서 '핵심투자위험'에서 하이퍼링크 클릭시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으로 이동

◦ (하이퍼링크 설정)문서 내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집기에 책갈피-하이퍼링크 설정 기능 추가(한글의 '책갈피', '하이퍼링크'와 유사)

※ 기존에는 他공시서류에 대한 하이퍼링크, 정기보고서의 요약표↔상세표 하이퍼링크만 삽입 가능

### 3. 향후 계획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협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공시 실무자에게 전자공시 작성 등 실무 교육을 지속 제공

※편집기 개선사항이 반영된 전자문서 제출요령(매뉴얼)은 DART 접수홈페이지에 게시

◦또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제출인 등을 위하여 추후 DART 편집기 개선사항 등을 동영상 가이드로 제공할 예정

□ 앞으로도 제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DART 편집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2024년 2월 29일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 의 3)**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 기준시가 <b>12억원</b> 이하 주택 <input type="checkbox"/>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b>적용시기 조정</b>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안정 강화

**2.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b>일부 사업장 이전·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b>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령 §21)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input type="radio"/>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input type="radio"/>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input type="radio"/>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input type="checkbox"/> 면제 범위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input type="radio"/>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 의 5)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input type="radio"/>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input type="radio"/> 공포일부터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조정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22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개정)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9%
  - (개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3.5%
  - (적용시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 (현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개정)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부가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국조칙)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

- 외국법인과의 원가부담약정 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24.02.23)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9 조 제 15 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 69 조 제 15 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3-법규국조-0458, 2024.02.1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소재 자회사(◆◆◆◆, '미국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
- 질의법인은 '23.1.1. 보유 중인 미국자회사 지분 전부를 미국 내 관계회사(◎◎◎◎, '미국관계사')에 양도('쟁점거래')하고, 그 양도대가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따라 계산된 배당소득 ○○○달러에 대하여 10%(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달러('쟁점세액')를 미국 현지에서 납부(원천징수)
- 쟁점거래 이후 미국자회사는 미국관계사에 합병되거나 혹은 미국 내국세법에 따라 투시과세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할 예정

2024년 3월호

- 한편, 쟁점거래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질의법인은 주식 양도대가와 세무상 취득원가의 차이를 주식양도소득(쟁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예정

(질의요지)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세액 (10% 제한세율 적용)이 원천징수된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신)

-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쟁점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 중 일부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쟁점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서면법규소득 2023-2095, 2024.03.0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법인 대표자는 20.1.1. 취임한 후 22.12.31. 퇴직함
- 법인의 정관에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무보수 기간과 보수 기간이 혼재되어 있음

(질의요지)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시 무보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 22 조 제 3 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T Consulting</li> <li>▪ CRM / Risk Management 등</li> <li>▪ ESG 전략 및 시스템 구축자문</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